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히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에 하천수 명시〉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7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1.
3. 회부연월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Ⅲ. 검토의견

1.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히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에 하천수 명시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에 하천수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화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 ----- ----- -----하천·댐-----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¹⁾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함)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함)를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²⁾).

또한,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유지·관리와 더불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에게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7조제1항³⁾).

화재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미리 갖추어진 곳 뿐만 아니라

2)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본법」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진압하지 아니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의 취지는 화재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용수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임.

한편, 「하천법」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50조),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0조의2제1항)⁴⁾.

4) 「하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8. 6. 8.>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1. 4. 14., 2013. 3. 23., 2018. 6. 8.>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 ⑪ (생략)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하천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일시적 작업용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취지는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의2에 언급된 “소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⁵⁾에 저장하기 위한 용수를 의미한다고 환경부는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도 국가·지자체 등에서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⁶⁾⁷⁾.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영 제11조 관련)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

현행법 제27조제1항에서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 저수지, 수영장의 물”은 예시 규정이므로, 동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법률의 해석을 통해 ‘하천수’를 소방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전체 화재 중 야외나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율이 적지 아니하고(2024년의 경우 전체의 22%가 야외나 임야에서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 중 하천수 이용량(35.0%)이 댐용수 이용량(53.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법」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화재진압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임⁸⁾.

이에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 예시에 하천수를 추가로 명시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6)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의 취지, 화재 발생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화재진압은 화재 발생 즉시 이행되어야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진압(소방)을 위해 하천수를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하천법 제50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됨.

7) 자료: 환경부

8) 실제로 강원도는 2023년과 2024년에 화재 진압이라는 특수성, 신속성을 감안하여 화재진압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수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있다고 보임⁹⁾.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주거	비주거	기타 (야외)	자동차, 철도차량	임야 (산불)	선박, 항공기	위험물, 가스제조소
2024	37,614	10,437	13,948	7,293	4,831	976	100	29
2023	38,857	10,577	14,487	7,415	4,725	1,519	97	37
증감 (‘23년 대비)	건	▽1,243	▽140	▽539	▽122	106	▽543	3
	%	▽3.2%	▽1.3%	▽3.7%	▽1.6%	2.2%	▽35.7%	3.1%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활동 현장에서 하천수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난 대응의 신속성·효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도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수를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천법 개정을

9) 참고로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64호, 2025. 9. 1. 발의)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추진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351